

파. 조세감면 한도기준인 외국인투자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16조의2제22항)

- 1)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시가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및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외국투자자가 납입한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減資)차익 및 감자차손을 외국인투자금액에 가감함.
- 2) 외국투자자가 실제 납입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안 제116조의27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투자누계액의 범위 등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에 준하여 정함.

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대대상에서 기업형슈퍼마켓의 제외(안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 내 사업자의 범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슈퍼마켓을 제외함.

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0조제5항 및 제6항)

- 1) 문화접대비의 최소금액기준을 접대비 총지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문화접대비의 범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를 포함함.
- 2) 문화접대비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의 사용목적 추가(안 별표 1)

- 1)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의 파견 지원,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 또는 기술도입 지원, 조업중단으로 인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는 출연금의 사용 목적에 추가함.
- 2)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투자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

박 재 완

●대통령령 제23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를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text{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text{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제11조제2항제3호 중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한다.

제1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

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를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등”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

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0항에 따른 자”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끝나는 날”을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제6항제3호나목 본문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고정자산”을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중”을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text{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text{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을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을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의 1의”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계산식 중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 계산식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을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으로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 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제5호가목 중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을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을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으로, “제26조제4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장제2절의2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로, “제13조제12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3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제38조제5항제1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제38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3호의”를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2항제4호의”를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제38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로, “제13조제10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43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4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도 및 종목이”를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로, “신고일”을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로 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5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노부모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合家)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노부모 동거봉양 등에 따라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확대하되, 합가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 1)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며,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 1)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 등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익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지급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